

# [양형위원회 제132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]

## 1. 양형위원회 제132차 회의 내역

- 일시: 2024. 6. 17. 16:05
- 장소: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
- 주요 안건
  - 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심의
  - ②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심의

## 2. 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
- 양형위원 개임, 위촉장 수여식 개최
- 전문위원 개임, 위촉장 수여식 개최
-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-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

## 3. 전문위원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제162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

## 4.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심의

### 가. 설정 범위

#### 1)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##### 가) 신규 설정 대상 범죄

- (1)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(제97조 제1항 제1호, 제2호) 포함 여부(적극)
- (2)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[제97조 제2항 제1호(제10조 제2항), 제3호] 포함 여부(적극)
- (3) 위 각 행위의 상습범(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) 포함 여부(적극)

##### 나) 설정 제외 범죄

- (1) 야생생물법, 해양생태계법상 동물학대 등 관련 범죄 포함 여부(소극)
- (2) 동물보호법상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(제97조 제1항 제3, 4호, 제2항 제4, 5호) 포함 여부(소극)
- (3)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등 포획·판매·알선·구매 범죄[제97조 제2항 제1호(제10조 제3항 제1, 3, 4호)] 포함 여부(소극)
- (4) 동물보호법상 동물유기 범죄(제97조 제2항 제2호, 제97조 제5항 제1호) 포함 여부(소극)
- (5) 그 밖의 동물보호법위반범죄(제97조 제5항 제2, 3, 4, 5호) 포함 여부(소극)

다) 심의 결과

- 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
나. 유형 분류

1)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- 가) 신설 양형기준의 명칭을 ‘동물보호법위반범죄’로 정할지 여부(적극)
- 나) 별도의 대유형 분류를 하지 않고, 형량범위를 고려하여, 법정형을 기준으로 ①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할지 여부(적극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			
2	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			

다) 심의 결과

-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- 신설 양형기준의 명칭을 ‘동물학대범죄’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

## 5.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심의

### 가. 설정 범위

#### 1)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##### 가) 추가 설정 대상 범죄

- (1) 성폭력처벌법 제11조(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) 포함 여부(적극)
- (2)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(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) 포함 여부(적극)
- (3) 형법 제303조 제1항(피보호·피감독자 간음) 포함 여부(적극)

##### 나) 설정 제외 범죄

- (1)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(피감독자 추행) 포함 여부(소극)
- (2) 성폭력처벌법 제12조(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) 포함 여부(소극)
- (3) 형법 제303조 제2항(피감독자 간음) 포함 여부(소극)

##### 다) 심의 결과

- 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-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(피감독자 추행)을 설정 범위에 포함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

### 나. 유형 분류

#### 1)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- 가) 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범죄를 대유형 '1. 일반적 기준'의 중 유형 '다. 장애인(13세 이상)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'에 포함 여부(적극)

#### 01<sup>1</sup> 일반적 기준

다. 장애인(13세 이상),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·피감독자(19세 이상) 대상 성범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			
2	피보호·피감독자 간음			
3	의제추행	- 10월	8월 - 2년	1년6월 - 3년
4	의제간음/강제추행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6년
5	유사강간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6	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
나)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를 대유형 '1. 일반적 기준'의 중유형 '나.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'에 포섭 여부(적극)

01 <sup>1</sup> 일반적 기준				
나.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				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공중밀집장소 추행			
2	일반강제추행	- 1년	6월 - 2년	1년6월 - 3년
3	청소년 강제추행	1년 - 2년	1년8월 - 3년4월	2년8월 - 4년8월
4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/특수강제추행	2년6월 - 4년	3년 - 6년	5년 - 8년
5	주거침입 등 강제추행	3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6	특수강도강제추행	5년 - 8년	7년 - 11년	9년 - 13년

다) 심의 결과

-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
## 6. 향후 일정

### 가. 제13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

■ 일시 : 2024. 8. 12.(월) 오후

■ 안건 :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점유기준) 심의 및 수정안 확정